

공 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 11. 18.

성 남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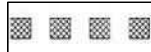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기 정

제10조 (대지내 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

- ①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 ②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시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4.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지형차로 인해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 도면표시



변 경

제10조 (대지내 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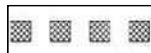
2.----- (생략)

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차량진출입이 허용된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경계석, 보행자 안전 울타리, 과속방지턱, 차량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3.----- (생략)

4.----- (생략)

• 도면표시



변경사유

-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미반영된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결과 반영
- 차량진출입이 허용된 공공보행통로 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조항 추가

나. 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11.18. ~ 2024.12.0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의견제출 및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4)

마.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사 업 명: 「시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수정구 시흥동 1-1번지 일원
3. 사업지구 필지 및 면적: 시흥동 268필지, 339,533㎡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시 행 자: 성남시 수정구청장
6. 사업기간: 2024. 11. ~ 2026. 6.(19개월)
7. 사업예산: 79,963천원(국비 77,250천원, 시비 2,713천원)
8.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사업지구별 지번별 내역, 사업지구 위치도
 - 나. 열람장소: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9.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31-729-55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나. 전 화: 031-729-5540~2
- 다. 팩 스: 031-729-5518
- 라. 우 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신흥동,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4 - 609호

「상대원2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1. 지 구 명: 「상대원2지구」
2. 사업위치: 상대원동 2988번지 일원(108필지, 17,940㎡)
3.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2. 12.(31일간)
4. 사업시행자: 성남시 중원구청장
5. 사업기간: 2024. 11. ~ 2026. 11.(2년)
6. 사업예산: 28,260천원(국비: 28,182천원, 시비: 78천원)
7. 서류 열람

가. 관계서류: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 조서

나. 열람장소: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729-65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나. 전 화: 031-729-6541~2

다. 팩 스: 031-729-6517

라. 우 편: 우)13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성남동,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성남시 공인 조례 제3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성남시 분당구청장

1. 공인등록

- 공인의 등록연월일: 2024. 11. 29.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사 유	비 고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2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3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4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5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6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1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2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3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4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5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6호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	특수공인

2. 공인폐기

- 공인의 폐기연월일: 2024. 11. 29.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사 유	비 고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2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3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4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5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정자1동장인 통합민원전용6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1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2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3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4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5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성남시분당구청장인 정자1동 통합민원전용6호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특수공인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합80228 소송비용액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합8007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
3. 공고대상자

대상자	납부자주소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반송사유
방*정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번길 *, 50*호 (괴정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합80228 소송비용액확정	4,056,573	수취인불명·이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합80078 소송비용액확정	13,991,162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각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본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기간 내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3)로 연락 바랍니다.